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2.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6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2월 6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영하

### 가. 제안이유

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21641호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 1월 13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며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10조에서는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공유재산

-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시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
- (2)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같은 조제5항의 “일반경쟁입찰” 을 “일반입찰” 로 명칭 변경함
- (3) 안 제24조에서는 「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명칭을 변경함
- (4) 안 제24조, 안 제27조, 안 제28조,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에서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변경됨에 따라 “아파트형 공장” 을 “지식산업센터” 로 명칭을 변경함
- (5)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대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“1,000분의 25 이상” 을 “1,000분의 20 이상” 으로 변경함
- (6)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인용법률인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 의 제명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 으로 변경함
- (7) 안 제31조과 안 제88조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분할납부 가능한 대부료, 사용료 및 변상금의 최소금액을 “50만원 초과” 에서 “100만원 초과” 로 변경함
- (8) 안 제34조의2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의3 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

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그 교환차금(마포구가 수령하는 경우)을 5년 이내에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환차금 분납제도를 신설함

- (9)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31일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용요율이 기존 1,000분의 25에서 1,000분의 20으로 개정되었고,

이어서 2011년 1월 13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대부료 요율을 국유지 및 사유지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, 관련 법 및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